

지적재산권과 기술가치평가

글 | 김 현 _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hyunkim@sechanglaw.com

오 늘날 지식기반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부상되고 있으며, 기업 활동 및 기업거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기업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는 연구개발, 기획관리, 첨단제품의 생산 등 지식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적인 활동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활동의 중심이 과거의 노동과 자본집약적인 경제에서 기술과 같은 무형의 지식기반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인 고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수·합병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유형자산은 물론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기업평가과정이다. 기술의 가치가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금, 기술의 정확한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신용 위주의 금융제도가 도입되고, 개별적인 기술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지적재산·기술자산, 재산적 가치 구체화 어려워

기술가치평가는 기술평가와는 구별되는데, 기술평가는 기술성 및 사업성을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정책이나 사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술동향·기술예측 등의 관점이 중심이 되는 반면, 기술가치평가는 개별 기술자산

이 가져다주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화하여 금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금융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거나 기술거래를 위한 자산의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 행해지는 개별기술에 대한 평가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무형의 자산이 현실적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등의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나, 기술발전이 빨라짐에 따라 선행기술이나 대체기술 사이에서 진부해지기 쉽고, 인접기술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며, 기술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등 지식 자체의 성격상 유체물과는 달리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통상의 가치평가와는 달리, 부동산 또는 동산 등과 같은 유형물은 수익, 비용 또는 시장적 가치를 어느 정도 쉽게 구체화할 수 있는데 반하여, 지적재산과 기술자산은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성은 물론 유한성 및 개별성을 가지므로 해당 기술의 기술적 유효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효성을 함께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먼저, 기술적 유효성은 그 기술적 자산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선행기술과 경쟁기술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해당 기술이 선행기술에 대해 등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의 판단과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기술들 사이에서 단순한 대체기술이 아닌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성의 수준, 기술의 활용성, 기술의 파급성 및 제품생산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가치 높아도 경제적 성공 보장 못해

또한, 시장성, 경쟁력, 사업추진능력 및 재무구조 등을 기준으로 경제적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물론, 경제적 유효성

은 기술적 유효성을 전제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자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제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술적 가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기술이더라도 사업주체의 추진능력, 영업능력, 제품의 시장규모 등에 따라 그 수익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술이전과 같은 거래와 M&A 진행시 무형자산의 평가, 엔젤 및 벤처투자 등과 같은 기술적 무형자산의 대부분을 평가대상에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거래시장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인 NTTC를 대표로 하여 수많은 컨설턴트와 브로커들이 기술거래 전과정에서 기술가치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지적재산권 평가의 표준을 확립하여 휴먼특허에 대한 이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관계자·변리사·대학·기술이전 관계자 등의 각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특허평가지표를 작성하여 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기술거래소(KTTC)를 설립하여 기술이전, 거래를 위한 기술평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산업기술평가원·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과학기술평가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부설 기술이전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이전센터·KAIST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내 창업지원실, 기술이전실 등에서 기술을 평가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술가치평가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물적담보 부족을 보완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기술가치 평가가 아닌 기업의 기술인력, 연구설비 등을 감안한 기술력 평가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등 기술자산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나 전문기관·전문인력이 양성

되지 않은 상태로 기술자체만을 담보로 하는 금융관행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차원에서 기술가치평가 통일성·타당성 확보해야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내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기술담보제도가 활성화되어야 중소·벤처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체계적인 방법과 홍보를 통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산업부문마다 기술가치평가를 맡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고, 이들이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경쟁적으로 수행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종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부차원에서 평가기법, 평가규정, 평가기준, 평가양식 등의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기술가치평가의 통일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술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과 코넬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중재인, 과기부·건교부 법률고문,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